

2025년 일부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개정안 주요내용

2025. 2.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INSTITUTE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목차

I.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체계

·

II. 학생생활지도 범위 및 방법

·

III. 고시 해설서 주요 개정사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개정안 주요내용

I. 학생생활지도의 법적 체계

교육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초·중등교육법

-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0.>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34호)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훈육)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제18조(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학교의 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학교 규칙(학칙)

제12조(훈육) ⑪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개정안 주요내용

II. 학생생활지도 범위 및 방법

교육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1.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 및 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개선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의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2. 학생생활지도의 방법 및 방식

방법	방식
조언	문제 인식 시 언제든지 조언 가능, 권고
상담	상담 예약 및 사전협의, 상담 거부 및 중단 가능
주의	학교안전 및 질서유지 저해 우려 시 주의
훈육	지시, 제지(물리적 제지 포함), 분리, 물품조사 및 분리보관
훈계	과제 부여(대안행동, 성찰문, 원상복구)
보상	칭찬, 상 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 개정안 주요내용

Ⅱ. 고시 해설서 주요 개정사항

교육부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1. 주요 개정 내용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절차 명확화

절차 도식화 수정

나. 최근 개정 법안 반영

신설 법안 추가 및 부분 수정

다. 문구 수정 및 명료화

문구 명료화

라. 제지 및 분리 관련 명료화

학습권 침해의 최소화 원칙, 수업 중 일시분리 등 강조

마.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최근 내용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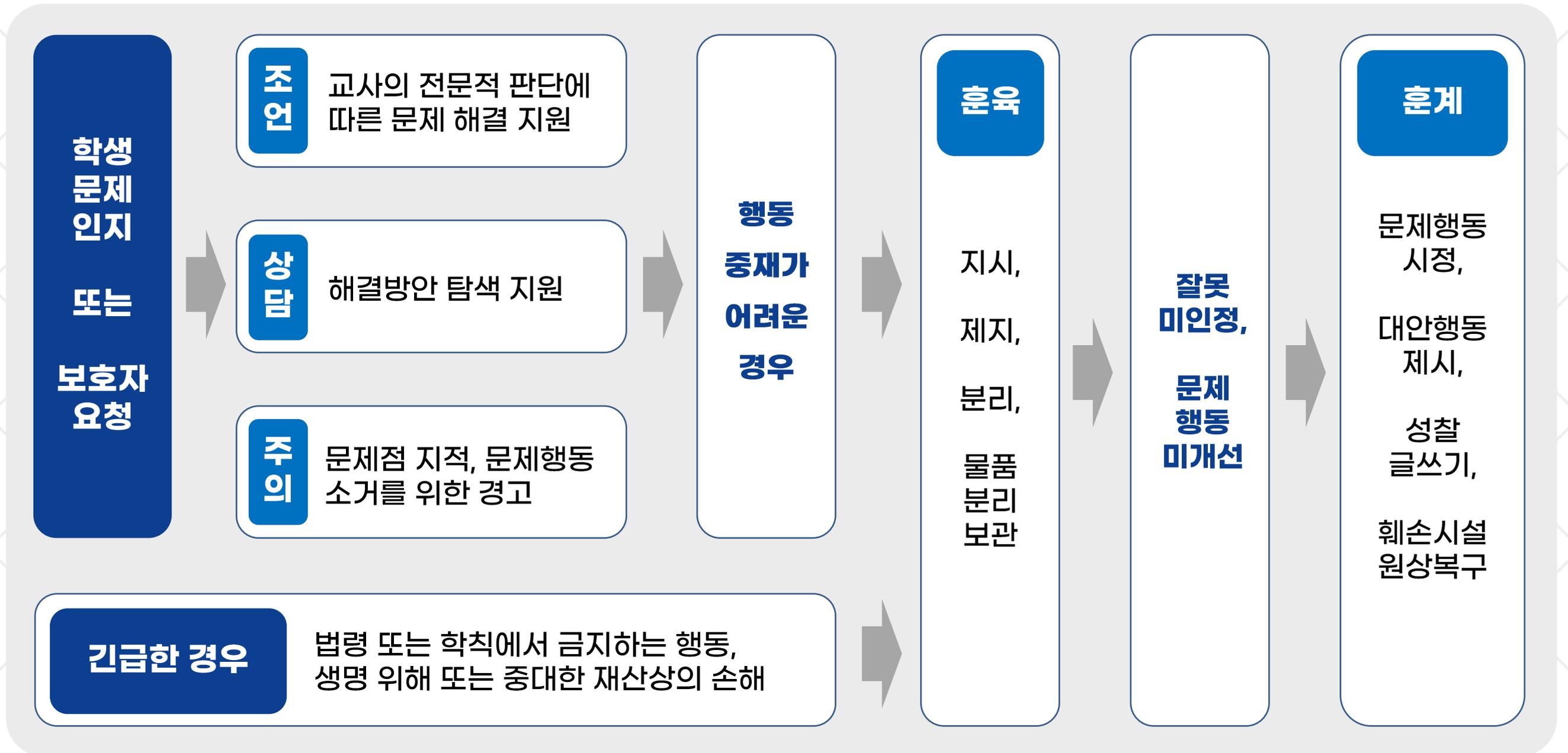
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내용 추가

사. 서식 및 사례 추가

서식 및 현장 적용 사례 추가

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절차 명확화



나. 최근 개정 법안 반영

문구 명료화

예시) 법적 근거 마련의 의의

최근 개정 사항 추가

예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③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부분 삭제

예시) 부칙 제2조(학칙에 관한 특례) “... 다만, 학교의 장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예정~~)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법률 개정내용 반영

예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 9. 27.>

다. 문구 수정 및 명료화

- 띄어쓰기 및 문구 수정
- 문구 또는 내용 상세 추가
- 해설, 참고자료, Q&A 등 내용 명료화
- 불명확한 문구 삭제
- 법령 근거 추가
- 양식 통일 및 수정
- 용어 통일

라. 제지 및 분리 관련 명료화

1) 물리적 제지

-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동,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해당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음

- 단, 물리적 제지를 당하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실시해야 함

- *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심사 중으로** ‘위험성의 제거 또는 긴급 상황 종료시까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라. 제지 및 분리 관련 명료화

2) 분리지도

- 분리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실시**

- 교실 밖 공간으로 분리 시 해당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분리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상담 또는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심사 중으로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 마련’을 명시

- **훈육으로서의 분리**는 생활지도의 일환으로서 **법령에 근거한 징계·피해자 보호 조치*와는 다르므로** 「학교 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제8조(**출결상황**) **기재 불필요**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등),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의 분리 조치

마.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관련

-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 **교육 목적의 사용은 가능**

- 교사가 수업을 위해 활용하는 AI디지털교과서, 태블릿 PC 등은 교육 목적의 사용이므로 수업 중 사용 제한 대상이 아님
-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수업 참여를 위해 휴대전화를 보조공학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는 교육 목적 사용으로 인정

-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하여 사용 가능**

- 긴급한 상황은 대상 학생이 피해를 끼친 정도나 끼칠 가능성, 흉기나 위험한 물건 소지 및 사용 여부, 기타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있는 교원의 판단 하에 결정

마.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 국가인권위원회 최근 결정사항('24.10.7.)

- 학칙에 따라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음

▶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관련 보도자료(2024.10.7., OO언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지난 2024. 10. 7.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고교에서 등교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는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함. "중·고등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수거와 보관은 장점이 단점보다 적지 않고 피해 최소성을 위반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한편 외국 주요 선진국들도 최근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과몰입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연이어 시행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사건에 대해서는 결정례를 작성하지 않으므로 관련 보도자료를 명시함

마. 교내 휴대폰 사용 제한

참고 해외 주요국가 사례

- **2022년 기준, 4개국 중 1개 국가는 법이나 정책으로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도입함.**
이중 13%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14%는 정책이나 지침으로 시행 중임.
- **(프랑스)** 15세 이하 어린이의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를 법으로 제정하여 2018년 9월부터 시행함.
- **(미국)** 플로리다 주를 비롯한 18개 주에서 교내 휴대폰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대한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정책으로 실시함.
- **(중국)** 2021년, 부모의 서면 동의 없이 휴대폰 반입을 금지하는 교육부 고시
- **(네덜란드)** 2024년 1월,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했고, 9월에 초등학교로 대상범위를 확대함

※ 우리나라 현황

교육부	2023년 9월 1일 시행된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 제4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를 명시함
입법안	2024년 8월 13일, 조정훈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제20조의3에 교내 휴대폰 사용 을 제한하는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하여 대표발의함.(소관위 심사중)
인권위	2024년 10월 7일, 전원위원회 를 개최하여 고교에서 학생 휴대폰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함. 이는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과잉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10년 만에 바꾼 것임.

※ 출처: 국회도서관 2025-2호(통권 제2호)

바.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도 학생생활지도 고시 적용 대상임** (고시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 특수교육대상자의 보조공학기기는 고시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제한 대상이 아님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적 제지 등 **행동 중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화 교육지원팀은 지도·제지 방안, 전문기관 및 가정 연계 등 중재 내용을 **학생의 개별화교육 계획에 포함**하여야 함. 이 때, 지원팀에서의 **보호자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도록 유의하여야 함

사. 서식 및 사례 추가

1)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만들기 책임 규약(예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생활지도 영역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분야

③ 학교구성원의 책무

1.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합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4.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학교장

본인은 위와 같이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학 생) 학년 반 학생 이름 :
 (학부모) (서명)



사. 서식 및 사례 추가

2) 분리지도학생 관리 대장(예시)

〈○○학교〉				
날짜	2025. . . ()	분리 장소	○○실	
대상학생 (학번,이름)	분리사유	분리시간	학습지원 내용	지도교사
10101 안00		10:00~10:20 (20')		

사. 서식 및 사례 추가

3) 특수교육대상자 00실(일시 분리장소) 관리 대장(예시)

〈○○학교〉			
일 자		확인(서명)	지도 교사
학번		학생 성명	
조 치	심리안정을 위해 감각볼 10분 제공 학습을 위해 수학○○과제 제공		
특이 사항	1. 심리안정 사유로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사. 서식 및 사례 추가

4) 보호자 인계 확인서(예시)

보호자님께!

○○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학칙에 따라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보호자에게 학생을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인계에 따른 가정학습 협조사항

- 아래의 '보호자 인계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인계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00-000-0000 (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이용)

2025년 00월 00일

○○ 학교 장 ※직인생략 가능

보호자 인계 확인서

아래와 같이 학생을 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 서식 및 사례 추가

5) 가정학습 점검 확인서(예시)

<table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padding: 0 10px;">학년</td> <td style="padding: 0 10px;">반</td> <td style="padding: 0 10px;">이름</td> </tr> </table>	학년	반	이름						
학년	반	이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가정학습 일시</th> <th style="width: 80%;">가정학습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년 월 일</td>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td> </tr> <tr> <td style="padding: 5px;">특이사항</td> <td></td> </tr> </tbody> </table>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body> <tr> <td style="width: 40%; padding: 5px;">보호자 성명</td> <td style="width: 20%;"></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right; padding: 5px;">(서명)</td> </tr> <tr> <td style="padding: 5px;">보호자 연락처1</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학생과의 관계 ()</td> </tr> <tr> <td style="padding: 5px;">보호자 연락처2</td> <td></td> <td style="text-align: right; padding: 5px;">학생과의 관계 ()</td> </tr> </tbody> </table>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							
<p>위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점검 · 확인합니다.</p>									
<p>2025년 00월 00일</p> <p>○○○ 학교장 (서명)</p>									

사. 서식 및 사례 추가

6) 현장 적용 사례

현장 적용 사례

초등

- 학생을 일정 기간 관찰하거나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부모에게 상담 및 병원 진단을 받아볼 것을 조언함.
-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교내 통행 지도를 위해 학교생활을 관찰 후 일일교육계획, 학급 훈화, 알림장 등을 통해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기, 휴대폰을 보며 걷지 않기, 계단 한 칸씩 올라가기, 친구와 다투거나 괴롭히지 않기 등 구체적 지침을 조언함.
- 학생들의 모둠 활동 시작 전 의사소통 방법, 역할 분담, 발표순서, 갈등 해결 방법 등을 미리 조언함.
-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조언함.

중등

- 수업 중 충동조절이 어려운 학생을 꾸준히 관찰 기록하고 상황에 따라 녹화 및 녹음을 하여 보호자에게 교육청 위(Wee) 프로젝트 등을 안내하고 전문 상담을 받도록 권유함.
- 상급학교 선택과 관련하여 학생의 흥미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의 진로심리검사를 소개하고 고용24(<https://www.work24.go.kr/>)를 활용하여 관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함.

특수

- 통합학급 내 규칙 만들기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추가
 - 1) 학생의 현행 수준을 반영한 규칙 변환 (예)아침독서 대신 색칠하기
 - 2) 규칙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 (예)교사가 박수를 세번 치면 모든 행동을 멈추고 교사를 바라본단 규칙을 그림으로 만들어 칠판에 게시

감사합니다.